



## 물질안전보건자료 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제품명

분말형 음이온성 고분자 응집제

### 1.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# 가. 제품명

제품명 분말형 음이온성 고분자 응집제

제품유형 혼합물

####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제품의 권고 용도 수처리 약품, 제지용 공정약품, 산업용 공정약품 등

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해당없음

#### 다.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급자의 정보

회사명 에스엔에프코리아 (주)

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, 100-718

소공로 94 OCI 빌딩 9층

긴급전화번호 +82-2-3455-6100

팩스 +82-2-3455-6199

E-mail hhpark@snfkorea.kr

### 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 분류되지 않음

####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그림문자 해당없음

신호어 해당없음

유해·위험문구 해당없음

예방조치문구 해당없음

#### 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

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화학물질명         | 2-프로펜산 나트륨 2-프로펜아마이드 중합체(SODIUM 2-PROPENOATE - PROPENAMIDE POLYMER) |
| 관용명 및 이명      | 2-프로펜산, 2-프로펜아마이드와의 중합체, 나트륨 염(2-PROPENOIC - POLYMER)               |
|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| 25987-30-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함유량(%)        | 88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학물질명         | 물 (Wate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용명 및 이명      | 디수소 산화물 (DIHYDROGEN OXID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| 7732-18-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함유량(%)        | 12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4. 응급조치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  
눈에 들어간 경우 눈꺼풀을 들어올려 15분 동안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. 지속적인 안구염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 
많은 양의 비눗물로 씻어내고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모두 벗으십시오. 지속적인 자극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다. 흡입했을 때  
맑은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.  
특별한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유해성은 없습니다.
- 라. 먹었을 때  
물로 입을 깨끗이 씻어내고 구토 유도를 하지 마십시오.  
특별한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유해성은 없습니다.
-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
해당없음
- 바. 기타정보  
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

##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소화제  
적절한 소화제  
물분무, 내알콜포말, 건조화학적제, CO2  
부적절한 소화제  
자료없음
-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  
열분해 생성물  
탄소산화물, 질소산화물  
시안화수소 :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연소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
보호구  
화재발생시,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하십시오.
- 라. 기타정보  
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표면이 매우 미끄러움

#### 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
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
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매우 미끄러움  
보호구  
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8.의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참조  
비상절차  
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함
-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
물에 닿지 않도록 함
-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
소량 누출시  
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. 즉시 쓸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 하십시오.  
적절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폐기하십시오.  
그 이후 물로 세척하십시오.
- 다량 누출시  
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. 즉시 쓸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 하십시오.  
적절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폐기하십시오.  
그 이후 물로 세척하십시오.
- 잔여물  
많은 양의 물을 멀리서 세척하시기 바랍니다.

## 7. 취급 및 저장방법

- 가. 안전취급요령  
바닥에 수용액 혹은 물에 젖은 분말제품이 있을 경우  
표면이 매우 미끄러움  
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안전한 저장방법  
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.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관용기를  
밀폐하여 주십시오. 산화제와 같이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-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
국내 규정  
자료없음
-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 
미분 발생시 배출기를 사용  
미분제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연적인 환기입니다.
- 다. 개인보호장비와 개인보호조치
- 호흡기 보호  
개인호흡장비는 필요하지 않음  
총먼지농도가 10mg/m<sup>3</sup> 이상인 곳에서는 방진마스크 착용
- 눈 보호  
옆가리개가 있는 보호안경 착용
- 손 보호  
PVC 또는 기타플라스틱 소재장갑 착용
- 신체 보호  
보호의를 착용하여 팔, 다리, 몸을 보호
- 추가참고사항  
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기준에 따라 취급
- 라. 환경노출관리  
자연에 무방비한 배출은 삼가하여야 하며, 강으로 흘려보내지  
마시기 바랍니다.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  
과립형태의 고체, 백색
- 나. 냄새  
없음
- 다. 냄새역치  
자료없음
- 라. pH  
5 - 9 @ 5 g/L
- 마. 녹는점/어는점  
> 150°C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
자료없음
- 사. 인화점  
자료없음
- 아. 증발속도  
자료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  
자료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 
폭발 위험성이 존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음
- 카. 증기압  
자료없음
- 타. 용해도  
물에 용해됨
- 파. 증기밀도  
자료없음
- 하. 비중  
0.6 - 0.9
- 거. 물분배계수  
-2
- 너. 자연발화온도  
(화학구조에 기초하여) 자연발화하지않음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더. 분해온도 | > 150°C              |
| 러. 점도   | 기술자료참조               |
| 머. 폭발성  | Kst = 0              |
|         | 2.5kJ 미만의 점화원에 비 가연성 |
| 버. 산화성  | 화학구조에 기초하여 산화되지 않음   |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화학적 안정성       |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안정적       |
| 나. 유해반응의 가능성     | 산화제에는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|
| 다. 피해야 할 조건      | 알려진 바 없음             |
| 라. 피해야 할 물질      | 산화제                  |
| 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| 질소산화물, 탄소산화물, 시안화수소  |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 |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건강 유해성 정보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급성경구독성                 | LD50/oral/rat > 5000 mg/kg   |
| 급성경피독성                 | LD50/dermal/rat > 5000 mg/kg |
| 급성흡입독성                 | 흡입 시 유해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|
|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        | 피부자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|
|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      | 자극없음, 사람에게 따라 자극을 나타내기도 함    |
| 호흡 / 피부과민성             | 과민성 반응 없음                    |
| 발암성                    | 발암성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|
| 생식세포 변이원성              | 돌연변이 유발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|
| 생식독성                   | 생식독성 없음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     | 알려진 영향 없음                    |
|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     | 알려진 영향 없음                    |
| 흡인유해성                  | 공급된 물질에는 아무런 위험이 따르지 않음      |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생태독성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보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어류급성독성         | LC50/Danio rerio/96 hours > 100 mg/L (OECD203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LC50/Oncorhynchus mykiss/96 hours > 100 mg/L (OECD203)    |
| 무척추동물에 대한 급성독성 | EC50/Daphnia magna/48 hours > 100 mg/L (OECD202)          |
| 조류급성독성         | IC50/Scenedesmus subspicatus/72hours > 100 mg/L (OECD201) |
| 어류만성독성         |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무척추동물에 대한 만성독성 |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생물에 대한 만성독성   |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육상생물에 대한 영향    | 알려진 영향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퇴적물독성          |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#####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보

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
| 분해   | 쉽게 생분해 되지 않음 |
| 가수분해 | 가수분해 하지 않음   |
| 광분해  | 자료없음         |

#### 다. 생물농축성

#####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보

|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|
| 생물축적 없음.        |     |
| 물분배계수 (Log Pow) | -2  |
| 생물농축계수 (BCF)    | ~ 0 |

#### 라. 토양이동성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보 | 자료없음      |
| 마. 기타 유해 영향   | 알려진 영향 없음 |

#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#### 가. 폐기방법 및 폐기시 주의 사항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잔여/ 미사용 제품의 폐기물 | 지역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.<br>해당국가규정에 따라 매립되거나 소각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오염된 포장          | 빈용기를 물로 헹구고 헹군물을 작업용액으로 준비하십시오.<br>지역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. 지역규정에 따라 매립되거나 소각될 수 있습니다. |
| 재활용             | 제품과 포장재는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유엔 번호 (UN No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|
| 나. 유엔 적정 선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|
|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|
| 라. 용기등급(해당하는 경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|
| 마. 해양오염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료없음               |
|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|                    |
| 화재시 비상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|
| 유출시 비상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|

### 15. 법적규제 현황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에 적용 대상임.
- 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조사 물질에 해당됨.
-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.
-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(사업장) 일반폐기물  
[단, 폐기물 발생 시 적법처리를 위하여 관할관청에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할 것.]
- 마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: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됨.
- 1) 2-프로펜산 나트륨 2-프로펜아마이드 중합체 : 기존물질 (KE-29706)
- 2) 물 : 기존물질 (KE-35400)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

- 1) 유럽연합 (EINECS/ ELINCS) :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
- 2) 미국 (TSCA) :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
- 3) 캐나다 (DSL) :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
- 4) 오스트레일리아 (AICS) :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
- 5) 일본 (ENCS) :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
- 6) 중국 (IECSC) :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
- 7) 한국 (ECL) :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
- 8) 필리핀 (PICCS) :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

#### **16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) 자료출처            | SNF SAS (France) |
| 2) 최초 작성일자         | 2010.06.29       |
| 3) 개정 회수 및 최종 개정일자 | 8회, 2017.03.28   |